

『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6년 8월 29일

나. 제출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6년 8월 29일

라. 상정일자 : 2006년 9월 4일

제11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김 인 중

나. 제안이유

- 택지개발, 아파트 신축 등 지역여건의 변화로 구미시 통리 반 설치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통리 증감 및 재정비로 인한 통리장 정수를 조정코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통장정수 : 현행 396명 ⇒ 400명(4명증가)
- 리장정수 : 현행 167명(변동없음)

라. 참고사항

○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수 영

- 택지개발, 아파트 신축 등으로 지역의 과대·과소한 통리의 분리 또는 통·폐합으로 인하여 통리장 정수 조정을 위한 개정조례 안임.
- 주요내용은
 - 통장 정수를 396명에서 4명이 증가된 400명이며 증가 내용은 도량동 1개통, 상모사곡동 2개통, 양포동 1개통임
 - 리장 정수는 167명으로서 변동 없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